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사용지침

인증을 받은 고객(이하 “클라이언트”)은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당 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I.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의 사용기준

- (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생산한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 (4) 클라이언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6) 인증마크는 클라이언트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7)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법적구속력을 가짐)

II. 클라이언트 준수사항

1. 클라이언트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클라이언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3)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 (4)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5) 일정 기간의 수상·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상·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6)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 (7)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3.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 (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시정조치 보고서가 송부됩니다.
- (2) 클라이언트는 시정조치 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당 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당 인증원 “부적합성 정도 평가 및 심사 결과 처분 지침서”에 따라 인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증서는 회수되며 필요 시 위반사실은 공표(정정공고) 될 수 있습니다.
- (4)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Ⅲ. 인증마크 사용요령

- (1) **인정기관 마크(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인증기관 마크(한국기업인증원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인정로고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인증마크의 종류

인정기관 마크	인증기관 마크
 KAB-XX-00	

나. 지정번호

경영시스템 종류	지정번호	경영시스템 종류	지정번호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KAB-QC-60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KAB-EC-52

※ 인증마크 사용예시 (인정마크는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횡렬 사용 시]



[종렬 사용 시]

- (2)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가로 15mm, 세로 10mm)이 되어야 합니다.
- (3) 마크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인증마크 이미지는 한국기업인증원 인증팀(032-324-9001)로 문의바랍니다.